

###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 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2. 12. 3.  
행정재무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2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년 12월 1일
- 다. 상정일자 : 1992년 12월 3일  
(제15회 정기회(휴회중) 제2차 행정재  
무위원회 상정)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金榮俊)

-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영등포구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 체계가 다르며,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  
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 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  
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항 제2  
호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함.

####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熙中)

醫療職 地方公務員인 專門醫 및 一般醫師에  
대한 醫療業務等 手當에 대하여 서울特別  
市를 除外하고, 各道·市·郡에서는 '89.1.1  
부터 資格證所持에 따라 手當을 差等支給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에서도  
他市·道와 均衡을 이루기 위해 改正條例  
準則(案)을 만들어 自治區에 示達되어 永  
登浦區廳長이 이를 근거로 提出한 改正條  
例(案)을 檢討한 바, 妥當하다고 思料됩니  
다.

다만, 公務員의 俸給이 '93.7.1부터 3% 引  
上되고, 各種手當이 凍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醫療業務手當이 平均 125% 대폭  
 引上된다는 점과 診療業務手當이 '93歲出  
 豫算(案)에 25,440천원이 計上되어 있으나,  
 '93.1.1부터 手當이 引上될 경우 여기에 所  
 要되는 追加額 30,324천원에 대한 豫算確  
 保問題를 講究해야 될 것으로 判斷됩니다.

#### 4. 質疑 및 答辯要旨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 5. 審査結果 : 원안 가결

###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 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제출년월일 : 1992년 11월
번호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改正理由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영등포구 의  
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 체계가 다르며,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 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 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항 제2호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함.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합 의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안 (지기01300-862, '92.11.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012,000원	월 673,000원
4년이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년이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2년이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년미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 新 · 舊 條 文 對 備 表

現 行	改 正 案																																																													
<p>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①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규정에 특수업무 수당중 의료직 공무원 중 의사와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p> <p>②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계약이 해지된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lt;별표1&gt;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구 분</td> <td style="width: 15%;">2 호</td> <td style="width: 15%;">3 호</td> <td style="width: 55%;">4호-나목</td> </tr> <tr> <td>의 사</td> <td>410,000</td> <td>554,000</td> <td>471,000</td> </tr> </table> <p>&lt;별표2&gt;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호 분</th> <th rowspan="2">의사로서의 근무연한수</th> <th colspan="2">보 건 소</th> </tr> <tr> <th>가 급</th> <th>나 급</th> </tr> <tr> <td>1</td> <td>3년미만</td> <td>430,000</td> <td>285,000</td> </tr> <tr> <td>2</td> <td>3년이상6년미만</td> <td>435,000</td> <td>290,000</td> </tr> <tr> <td>3</td> <td>6년이상9년미만</td> <td>440,000</td> <td>295,000</td> </tr> <tr> <td>4</td> <td>9년이상12년미만</td> <td>445,000</td> <td>300,000</td> </tr> <tr> <td>5</td> <td>12년이상</td> <td>450,000</td> <td>305,000</td> </tr> </table>	구 분	2 호	3 호	4호-나목	의 사	410,000	554,000	471,000	호 분	의사로서의 근무연한수	보 건 소		가 급	나 급	1	3년미만	430,000	285,000	2	3년이상6년미만	435,000	290,000	3	6년이상9년미만	440,000	295,000	4	9년이상12년미만	445,000	300,000	5	12년이상	450,000	305,000	<p>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li> <li>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li> </ol> <p>&lt;별표1&gt;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전 문 의</th> <th>일 반 의</th> </tr> <tr> <td>4 급</td> <td>월 609,000원</td> <td>월 554,000원</td> </tr> <tr> <td>5 급</td> <td>월 609,000원</td> <td>월 518,000원</td> </tr> </table> <p>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p> <p>&lt;별표2&gt;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등급별 근무연수별</th> <th>가 급</th> <th>나 급</th> </tr> <tr> <td>5년이상</td> <td>월 1,012,000원</td> <td>월 673,000원</td> </tr> <tr> <td>4년이상</td> <td>월 1,006,000원</td> <td>월 667,000원</td> </tr> <tr> <td>3년이상</td> <td>월 1,000,000원</td> <td>월 661,000원</td> </tr> <tr> <td>2년이상</td> <td>월 995,000원</td> <td>월 656,000원</td> </tr> <tr> <td>2년미만</td> <td>월 989,000원</td> <td>월 650,000원</td> </tr> </table> <p>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p>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012,000원	월 673,000원	4년이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년이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2년이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년미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구 분	2 호	3 호	4호-나목																																																											
의 사	410,000	554,000	471,000																																																											
호 분	의사로서의 근무연한수	보 건 소																																																												
		가 급	나 급																																																											
1	3년미만	430,000	285,000																																																											
2	3년이상6년미만	435,000	290,000																																																											
3	6년이상9년미만	440,000	295,000																																																											
4	9년이상12년미만	445,000	300,000																																																											
5	12년이상	450,000	305,000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012,000원	월 673,000원																																																												
4년이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년이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2년이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년미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